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2. 3 선고 2019가단50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2. 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. 8. 16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. 9. 5. 접수 제30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백지에

별지